

2018. 3. 5
07329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재청구

수신: KISCO홀딩스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0 9층 (마포동, 다보빌딩)

발신: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9, 410호(여의도동, 동북빌딩)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2018년 2월 22일 KISCO홀딩스(이하 '회사')의 주주명부('17.12.31 현재)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3.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1항은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모든 주주에게, 언제든지, 조건없이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 각종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절차와 요건 준수여부 확인 등을 이유로 본 주주의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회사가 거부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명확한 법령과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사가 요청하는 대로 청구목적과 주주명부의 내용을 최소화하여 재차 주주명부를 요청하기한 내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편물은 2018-03-05
제 3101957022328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여의도우체국장

- 다 음 -

가. 질의사항

- (1) 발신인(본 주주)이 소수주주권 행사를 행사함에 있어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사항은 무엇인가?

(2) 회사가 주장하는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함에 있어 정당한 목적과 그렇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3)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

나. 요청사항

위 질의사항과 별개로 회사의 회신 공문(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관련 회신 2018.03.02)에서 밝힌 대로 청구목적은 명확히 하고, 주주명부 내용을 최소화하여 재차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청구 하오니 성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의 목적

: 2018년도 회사정기주주총회(2018.03.23 개최)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2) 요청자료 :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이메일 송부 (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3) 요청시한 : 2018년 3월 9일 까지

(4) 열람 및 등사 담당자 : 발신인의 임직원

(5) 실질주주명부 파일 형태 및 양식: Excel 파일 등

주주번호	주주성명	보유주식수	주소

(6) 송부메일 주소: yjy@vpasset.com, remi.lee@vpasset.com

(7) 기타사항 : 2018년 2월 22일 주주명부 청구시 첨부한 잔고증명서를 재첨부함. 끝.

2018년 3월 05일

위 발신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종엽, 김봉기

